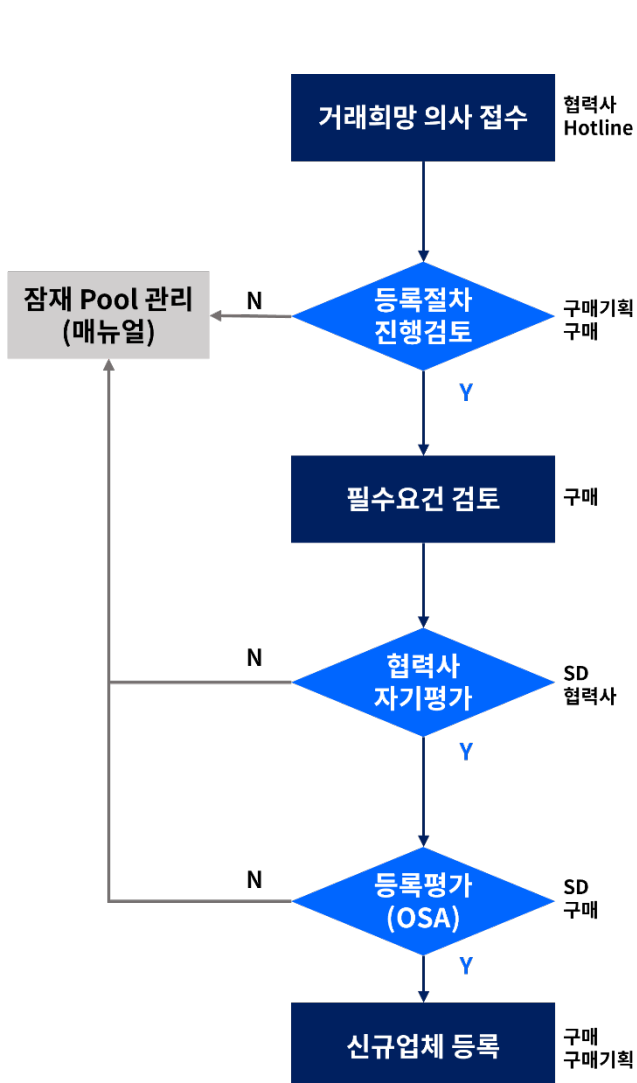


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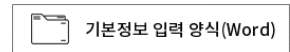
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은 협력사 Hotline을 통해 상시로 접수 가능하며, 거래 관련성 및 조달수요 검토 결과에 따라 잠재Pool 등록 또는 신규업체 등록절차가 개시됩니다.

등록절차가 개시되면, 자기평가를 통해 기초평가가 진행되며, 정규 등록평가인 On-Site Assessment(OSA)를 통과하면 신규업체 등록이 완료됩니다.



거래희망 의사 상시접수

- 방법 : [접수처 바로가기](#)
- 제출 : 회사소개서 및 “기본정보 입력 양식” 작성본



등록절차 진행 여부 검토(DBKR 구매부문)

- 필요 시, 대면 또는 유선 협의 진행
- 거래관련성 및 조달수요가 낮은 경우 잠재업체로 분류 (잠재업체 등록은 카테고리 담당자가 매뉴얼 관리)

필수요건 검토(DBKR 구매부문)

- 최근 회계연도 기준 신용등급 B등급 이상

협력사 자기평가 실시

- OSA 평가 전, 자기평가를 통한 기초평가 진행
- Supplier Development 부서에서 평가지를 이메일로 송부하며, 결과 접수 후 OSA 진행

정규 등록평가(OSA) 실시

- 등록 평가기준표에 따라 방문 평가 진행
- 결과는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되며,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있음

정규 등록평가(OSA) 기준표

항목	지속개선	CSR	공정관리	EHS	구매	자원관리	판매 /고객서비스	APQP	품질관리	설계 및 개발	현장관리	Audit
점수	12	30	45	24	39	57	12	24	75	15	33	3
비중	3%	8%	12%	7%	11%	15%	3%	7%	20%	4%	9%	1%

협력사 등록 취소 기준

- 부도, 폐업, 면허취소 또는 파산업체
-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유발 업체
-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가 부적절한 업체
- 중대품질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유·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
- 유사 동종업체를 선동하여 담합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- 어음, 수표 등이 거래정지 된 경우
-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,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해 가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 개시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
- 거래품목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
- 법규위반 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사례 등 하도급 질서의 위반 또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

협력사 등록 취소 절차

협력사에 거래해지 공문을 발송

- 서면으로 등록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
-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 내용에 명기